



의안번호	제 2024 - 18호
보 고 연 월 일	2024. 8. 12. (제13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63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수정	2
1. 개관	2
2. 형량범위	9
3. 양형인자	34
4. 집행유예 기준	47
III. 향후 일정	48

【별첨】

이혜랑, “사기범죄 권고 형량범위 / 양형인자(집행유예기준) 검토”
장유강, 이성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
자, 집유기준”

I. 제163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2024. 7. 15.(월) 14:00 ~ 18:00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1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준우, 이혜란, 이혜량, 장유강,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II.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수정

1. 개관

가. 2024. 4. 29.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결과

- (1) 심의 결과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부분에, 아래와 같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48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제1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51조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제1호	사기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 병과 가능)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벌금 병과 가능)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9조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 병과 가능)
	제11조 제1항 제2호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벌금 병과 가능)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 정의(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병과 가능)
	제15조의2 제3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2) 사기범죄 양형기준 표지(안)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형법 제348조),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의 상습범 포함)**, **보험사기방지법상 사기(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상습범, 제11조의 가중처벌 규정 포함)**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별도 유형분류 없음 ⇨ 현행유지

- 1) 현행법상 제8조. 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어(2024. 8. 14. 시행) 제8조 제1항 제1호로 변경됨.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의결시점(2025. 1. 13.) 기준으로 신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편의상 신법을 기준으로 표기함
- 2)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공갈’ 부분은 사기범죄 설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나. 법정형 및 양형기준 변화 추이

(1) 법정형 및 권고 형량범위 동일 유지

- 설정대상 범죄는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15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에 따라 3년 ↑ or 5년 ↑), 준사기(형법 제348조, 10년 ↓),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10년 ↓)에 한정되고, 법정형이 변경된 적이 없음
-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을 거쳐 2011. 7. 1.부터 시행됨 → 2021. 12. 6. 수정(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2023. 7. 1. 시행)이 있었으나 일부 양형인자가 정비되었을 뿐 유형분류나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된 적은 없음 [별첨 1.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① 2021. 12. 6. 수정(2022. 3. 1. 시행)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추가)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상당부분 피해	처벌불원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추가)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② 2023. 4. 24. 수정(2023. 7. 1. 시행)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양형인자의 정의	-	(추가)진지한 반성
		(추가)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양형기준 적용현황

(가) 전체사건 : 「202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에서 사

기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 사건은 14,620건

(나) 유형 및 감경/기본/가중 영역 비율

단위: 명, %

구분	유형	양형기준 영역						전체
		감경		기본		가중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일반사기	제1유형	1,714	25.6	3,526	52.7	1,453	21.7	6,693
	제2유형	701	28.4	1,406	56.9	363	14.7	2,470
	제3유형	208	24.4	398	46.7	246	28.9	852
	제4유형	31	36.0	19	22.1	36	41.9	86
	제5유형	1	10.0	6	60.0	3	30.0	10
	전체	2,655	26.3	5,355	53.0	2,101	20.8	10,111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778	65.9	804	29.8	115	4.3	2,697
	제2유형	553	37.8	794	54.3	116	7.9	1,463
	제3유형	73	28.4	121	47.1	63	24.5	257
	제4유형	16	36.4	15	34.1	13	29.5	44
	제5유형	16	33.3	6	12.5	26	54.2	48
	전체	2,436	54.0	1,740	38.6	333	7.4	4,509

- 일반사기 : 기본영역(53.0%) > 감경영역(26.3%) > 가중영역(20.8%) 순으로 기본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음. 다만, 제4유형은 가중영역(41.9%)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조직적 사기 : 조직적 사기는 감경영역(54.0%) > 기본영역(38.6%) > 가중영역(7.4%) 순으로 감경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음. 제2, 3유형은 기본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제4유형은 각 영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제5유형은 가중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제1유형의 사건수가 현저히 많아 전체적으로는 감경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임

(다) 양형기준 준수율

-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은 2018년(84%), 2019년(85.7%), 2020년(86.7%), 2021년(87.8%), 2022년(87.6%)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 선고형량 추이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 제3, 4유형 형량 증가추세)

(1) 도표

단위: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일반 사기	제1유형	감경	2,020	6.2	1,993	6.3	1,803	6.4	1,809	6.4	1,415	6.5
		기본	3,516	7.3	3,772	7.3	3,533	7.6	3,173	7.6	2,637	7.8
		가중	1,032	12.7	1,156	13.1	1,107	13.4	1,066	14.1	923	14.4
		합계	6,568	7.8	6,921	8.0	6,443	8.3	6,048	8.4	4,975	8.6
	제2유형	감경	745	11.8	720	11.8	682	12.0	824	12.3	595	12.8
		기본	1,269	15.5	1,333	15.8	1,310	16.4	1,310	16.2	1,086	16.6
		가중	252	25.6	261	26.7	278	29.4	326	28.1	240	29.9
		합계	2,266	15.4	2,314	15.8	2,270	16.7	2,460	16.5	1,921	17.1
	제3유형	감경	197	22.2	166	23.0	139	23.8	179	23.4	170	22.7
		기본	272	33.6	244	35.9	283	33.7	254	35.9	268	36.1
		가중	117	47.0	132	49.3	159	50.9	118	48.8	139	51.2
		합계	586	32.4	542	35.2	581	36.0	551	34.6	577	35.8
	제4유형	감경	8	30.0	13	29.5	10	29.2	12	32.8	15	37.2
		기본	22	41.5	8	46.3	21	40.2	10	47.4	8	60.0
		가중	20	70.2	18	81.0	15	67.2	19	71.1	14	76.3
		합계	50	51.1	39	56.7	46	46.6	41	54.1	37	56.9
	제5유형	감경	3	80.0	-	-	-	-	-	-	1	36.0
		기본	2	60.0	-	-	1	84.0	-	-	-	-
		가중	-	-	-	-	1	90.0	-	-	1	48.0
		합계	5	72.0	-	-	2	87.0	-	-	2	42.0
	전체	감경	2,973	8.8	2,892	8.7	2,634	8.9	2,824	9.3	2,196	9.7
		기본	5,081	10.9	5,357	10.8	5,148	11.4	4,747	11.6	3,999	12.2
		가중	1,421	18.6	1,567	19.2	1,560	20.7	1,529	20.5	1,317	21.8
		합계	9,475	11.4	9,816	11.5	9,342	12.3	9,100	12.4	7,512	13.1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	302	13.0	243	13.3	324	14.1	788	13.2	1,036	12.3
		기본	296	18.1	246	19.5	332	19.7	353	20.0	351	17.3
		가중	79	23.3	56	28.1	59	28.5	74	31.0	49	27.8
		합계	677	16.4	545	17.6	715	17.9	1,215	16.3	1,436	14.0
	제2유형	감경	49	17.8	59	16.1	60	19.5	233	19.3	244	18.4
		기본	94	24.8	117	22.4	188	26.0	328	26.6	306	26.3
		가중	75	32.0	48	34.3	54	36.0	67	42.4	51	40.0
		합계	218	25.7	224	23.3	302	26.5	628	25.6	601	24.2
	제3유형	감경	35	19.8	25	20.2	8	24.5	37	22.4	39	26.5
		기본	15	28.9	33	30.1	25	31.7	49	33.1	52	40.0
		가중	32	39.9	10	49.1	18	51.3	40	59.1	29	58.1
		합계	82	29.3	68	29.3	51	37.5	126	38.2	120	40.0
	제4유형	감경	37	19.2	4	27.0	-	-	-	-	14	30.6
		기본	-	-	7	41.1	8	47.5	2	39.0	9	47.1
		가중	-	-	9	46.0	3	60.0	7	114.0	6	61.3
		합계	37	19.2	20	40.5	11	50.9	9	97.3	29	42.1
	제5유형	감경	-	-	-	-	-	-	-	-	4	34.5
		기본	1	60.0	1	42.0	-	-	1	30.0	4	54.0
		가중	2	114.0	1	144.0	-	-	-	-	-	-
		합계	3	96.0	2	93.0	-	-	1	30.0	8	44.3
	전체	감경	423	14.6	331	14.5	392	15.2	1,058	14.9	1,337	14.1
		기본	406	20.2	404	21.6	553	22.8	733	23.9	722	23.3
		가중	188	30.6	124	34.4	134	35.3	188	44.1	135	40.4
		합계	1,017	19.8	859	20.7	1,079	21.6	1,979	21.0	2,194	18.7

(2) 일반사기

- 일반사기 전체: 2018년(11.4개월), 2019년(11.5개월), 2020년(12.3개월), 2021년(12.4개월), 2022년(13.1개월)로 평균형량이 소폭 증가
- 소유형별: 소유형 1 내지 4의 평균형량이 유사·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임(소유형 5의 경우 표본이 많지 않아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3) 조직적 사기

- 조직적 사기 전체: 2018년(19.8개월), 2019년(20.7개월), 2020년(21.6개월), 2021년(21개월), 2022년(18.7개월)로 평균형량이 유사
- 소유형별: 소유형 1, 2의 경우 평균형량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소유형 3, 4의 경우 증가 추세로 분석할 수 있음

라. 결론

- 형량범위 ⇨ 전반적 재검토를 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 편입을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부분, 조직적 사기 부분을 중점 검토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전반적 재검토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가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조직적 사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2. 형량범위

가. 형량범위 분석 및 검토의 방법

(1) 개요

- ❶ 사기범죄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준)에 대한 양형분석
 - 양형기준 준수율, 선고 형량의 추세 등을 기초로 함
- ❷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보험사기방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편입 측면
 - 새로 설정대상에 포함되는 영향을 예상,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내지 형법 제347조 적용)에 대한 판결문분석 결과를 반영함

(2) 분석 방식

- ㉠ 양형기준 준수율 : 운영지원단 제공 「2022년_양형기준_적용현황 분석」에서 사기범죄 전체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은 확인되나, 대-소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대략적인 양형기준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소유형별로 '감경영역 하한부터 가중영역 상한'까지를 '전체 형량범위'로 보고, '전체 형량범위 내의 사건수 ÷ 전체 사건수 × 100%'를 산출하여 소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을 대체하기로 함
- ㉡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II」의 사기범죄 판결문분석[㉠보험사기방지법,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³⁾, ㉣보이스피싱(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⁴⁾ 결과⁵⁾를 기존 사기범죄의 대-소유형 분류 기준인 합산이득액 구간(1억 미만/1억 이상 5억 미만/5억 이상 50억 미만/50억 이상 300억 미만/300억 이상)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 설정 전 양형실무를 양형기준 적용현황과 비교분석함

3) ㉠㉢ 합계 1,044개 판결(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조사

4) '보이스피싱', '형법 제347조' 키워드로 중/동/남/서 법원 200개 판결문 무작위 선정조사

5) 다만, ㉠와의 비교시에는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보험사기 미수범, 피해액 불분명 등 비교에 부적절한 사례 일부를 제외하고 비교분석 하였음

- [별첨 2 - ‘일반사기’ 편입 가정] 위 ㉠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방지법 판결문 1,016건을 각 소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존 양형기준 적용현황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표에 삽입(즉, 보험사기를 일반사기로 판단한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고도의 (점)조직성이 있는 점, 조직적 사기 정의(‘전화금융사기’를 예시로 제시)를 고려할 때 조직적 사기로 분류될 것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 실제 판결문분석 결과,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 사례에서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고 있었음
- [별첨 3 - ‘조직적 사기’ 편입 가정] 위 ㉠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방지법, 보이스피싱 판결문분석 결과를 기존 양형기준 적용현황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표에 삽입(보험사기, 보이스피싱을 조직적 사기로 판단한 경우 가정)
- 사기범죄 조사대상 판결문 중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사건은 4건에 불과하여 통계분석이 다소 제한됨
- 다만, 조사대상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판결문검색시스템상 이중경합범 포함 검색하여 방론으로 함께 검토할 여지는 있음

나.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 소유형의 추가 분류 여부 ➡ 견해 대립

(1) 1안(3인): 9단계로 세분화하는 안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6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7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 14년
8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0년 - 14년	12년 - 16년	14년 - 18년
9	300억 원 이상	13년 - 17년	15년 - 19년	17년 - 21년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5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 14년
7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10년 - 14년	12년 - 16년	14년 - 18년
8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3년 - 17년	15년 - 19년	17년 - 21년
9	300억 원 이상	16년 - 20년	18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 근거

- 현행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오로지 50억 원 미만,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이라는 3구간으로만 유형을 나누어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고, 유형별 피해금의 차이가 큰데도 형량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따라서 편취금액의 불법성이 비교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구간을 나누어 세밀하게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기죄에 대한 형량범위 상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형 세분화 없이 현재와 같은 5단계 유형 분류 범위 내에서 형량범위의 상향 조정을 시도할 경우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국, 유형을 세분화한 뒤 단계별로 점진적인 상향(피해금이 커지는 정도를 고려하여 각 감경·기본·가중영역의 상하한을 1년~3년씩 상향)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통해 고액 사기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0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형량범위를 설정함

(2) 2안(9인): 현행 양형기준의 소유형 분류를 유지하는 안

○ 근거

- 소유형의 추가는 필연적으로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을 동반하는데,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은 법정형 및 현행 양형통계를 70~80% 반영하는 것을 기초로, 필요에 따라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3유형 ~ 제5유형은 특정경제범죄법의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5억 원 이상은 제3유형으로, 50억 원 이상은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300억 원 이상만 제5유형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임
- 1안은 5억 원 이상을 다시 10, 20, 50, 100, 200, 300억 원을 기준으로 7개의 소유형으로 임의로 나누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선고 형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음
- 제3유형(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의 사건 수는 전체 사건수의 약 10%에 불과하고, 제4유형(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전체 사건수의 약 1%에 불과함
- 약 10%에 불과한 사건에 대해 9개 중 7개의 소유형을 제시하고, 약 1%에 불과한 사건에 대해 3개의 소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영역의 적절한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기도 용이하지 아니함
- 사기범죄는 그 행위유형이 다양하고 범의의 정도, 피해자의 숫자, 피해 회복 여부, 범행수법 등 고려해야 할 중요 양형인자가 많은데, 소유형 분류의 기준이 된 이득금액을 기준으로만 권고 형량범위에 큰 차이를 부여할 경우 다른 양형인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1안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감경영역 하한이 5년에서 13년으로 무려 8년이나 상향되는데, 300억 원 이상의 감경영역(처벌 불원, 13년 - 17년)이 200억 이상의 기본영역(피해 회복 없는 경우, 12년 - 16년), 50억 이상의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9년 - 12년)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높아지게 됨.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양형인자 중 이득금액으로만 형량범위를 8
년이나 상향하였기 때문에 다른 특별양형인자를 반영하더라도 합리
적인 형량범위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다. 일반사기

(1) 현행 양형기준상 형량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2) 선고 형량⁶⁾

- 양형위원회운영지원단 「2022년_양형기준_적용현황분석」 자료상 2022년에 선고된 전체사건(이종경합범 포함) 형량(수/비율)만 확인되고, 단일범(동종경합범) 대상 형량(수/비율)은 제공되지 아니함
- 전체사건과 단일범(동종경합범) 간 유형별 평균형량 차이가 근소하고, 연도별 변화추이 또한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제공받은 '전체사건' 형량분포[아래 표9-6]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함
- 형량 범위(감경/기본/가중 포함)는 아래 표에 회색 음영으로 표시

[표 9-6] 일반사기 형량분포(전체)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제1유형	수	5	51	93	663	92	1,937	10	1,081	16	723	963	-	135	10	82	1	361	
	비율	0.1	0.8	1.4	9.9	1.4	28.9	0.1	16.2	0.2	10.8	14.4	-	2.0	0.1	1.2	0.0	5.4	
제2유형	수	-	-	1	13	2	95	2	131	5	233	616	1	115	10	64	1	388	
	비율	-	-	0.0	0.5	0.1	3.8	0.1	5.3	0.2	9.4	24.9	0.0	4.7	0.4	2.6	0.0	15.7	
제3유형	수	-	-	-	1	-	10	-	3	-	4	27	-	2	1	2	-	97	
	비율	-	-	-	0.1	-	1.2	-	0.4	-	0.5	3.2	-	0.2	0.1	0.2	-	11.4	
제4유형	수	-	-	-	-	-	-	-	1	-	3	2	-	-	-	-	-	2	
	비율	-	-	-	-	-	-	-	1.2	-	3.5	2.3	-	-	-	-	-	2.3	
제5유형	수	-	-	-	-	-	-	-	-	-	-	1	-	-	-	-	-	2	
	비율	-	-	-	-	-	-	-	-	-	-	10.0	-	-	-	-	-	20.0	

6) 2022년 선고된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 대상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이하 동일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전체	수	5	51	94	677	94	2,042	12	1,216	21	963	1,609	1	252	21	148	2	850	
	비율	0.0	0.5	0.9	6.7	0.9	20.2	0.1	12.0	0.2	9.5	15.9	0.0	2.5	0.2	1.5	0.0	8.4	

유형		형량(월)																	
		19	20	21	22	24	26	27	28	30	32	34	36	38	42	48	51	52	
제1유형	수	1	19	1	14	242	10	2	8	76	2	-	57	1	19	9	-	-	
	비율	0.0	0.3	0.0	0.2	3.6	0.1	0.0	0.1	1.1	0.0	-	0.9	0.0	0.3	0.1	-	-	
제2유형	수	1	39	1	23	326	6	2	5	144	3	2	147	-	37	29	-	-	
	비율	0.0	1.6	0.0	0.9	13.2	0.2	0.1	0.2	5.8	0.1	0.1	6.0	-	1.5	1.2	-	-	
제3유형	수	-	3	-	3	135	-	-	6	78	1	1	155	-	50	114	1	1	
	비율	-	0.4	-	0.4	15.8	-	-	0.7	9.2	0.1	0.1	18.2	-	5.9	13.4	0.1	0.1	
제4유형	수	-	-	-	-	1	-	-	-	8	-	-	17	-	2	7	-	-	
	비율	-	-	-	-	1.2	-	-	-	9.3	-	-	19.8	-	2.3	8.1	-	-	
제5유형	수	-	-	-	-	1	-	-	-	1	-	-	1	-	-	3	-	-	
	비율	-	-	-	-	10.0	-	-	-	10.0	-	-	10.0	-	-	30.0	-	-	
전체	수	2	61	2	40	705	16	4	19	307	6	3	377	1	108	162	1	1	
	비율	0.0	0.6	0.0	0.4	7.0	0.2	0.0	0.2	3.0	0.1	0.0	3.7	0.0	1.1	1.6	0.0	0.0	

유형		형량(월)																전체
		54	60	62	65	66	72	78	84	96	108	120	132	144	156	162	180	
제1유형	수	2	6	-	-	-	1	-	-	-	-	-	-	-	-	-	-	6,693
	비율	0.0	0.1	-	-	-	0.0	-	-	-	-	-	-	-	-	-	-	100.0
제2유형	수	6	15	-	-	-	6	-	-	-	1	-	-	-	-	-	-	2,470
	비율	0.2	0.6	-	-	-	0.2	-	-	-	0.0	-	-	-	-	-	-	100.0
제3유형	수	18	71	1	1	3	36	1	14	5	5	-	-	-	2	-	-	852
	비율	2.1	8.3	0.1	0.1	0.4	4.2	0.1	1.6	0.6	0.6	-	-	-	0.2	-	-	100.0
제4유형	수	2	11	-	-	-	10	-	4	5	4	3	1	1	-	1	1	86
	비율	2.3	12.8	-	-	-	11.6	-	4.7	5.8	4.7	3.5	1.2	1.2	-	1.2	1.2	100.0
제5유형	수	-	-	-	-	-	-	-	-	1	-	-	-	-	-	-	-	10
	비율	-	-	-	-	-	-	-	-	10.0	-	-	-	-	-	-	-	100.0
전체	수	28	103	1	1	3	53	1	18	11	10	3	1	1	2	1	1	10,111
	비율	0.3	1.0	0.0	0.0	0.0	0.5	0.0	0.2	0.1	0.1	0.0	0.0	0.0	0.0	0.0	0.0	100.0

(3) 검토

(가) 소유형 1(1억 미만): **현행유지 ⇨ 견해 일치**

○ ①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양형기준 준수율은 **98.55%**로 높음(전체 6,693건 중 6,596건이 전체 형량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하 동일)
- **최빈값 6개월, 8개월, 12개월 순 / 평균형량 9.85개월**: 모두 기본영역 내에 위치함
- 각 영역별 단일범 평균형량도 6.5개월(- 1년), 7.8개월(6월 - 1년6월), 14.4개월(1년 - 2년6월)로 각 영역 내에 위치함

○ ②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보험사기(1억 미만) 판결문분석 사례를 일반사기로 편입 가정할 경우(즉 소급적용을 가정함, 이하 동일), 양형기준 준수율은 100%, 평균형량은 7.64개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법정형(하한 1년)을 고려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 여부: ① **작량감경시 처단형의 하한이 기본영역의 하한(6월)이 되는 점**, ② **판결문조사결과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③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례가 축적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형량범위 변경의 근거로 삼기엔 부족함

(나) 소유형 2(1억 원 - 5억 원 미만): **현행유지 ⇨ 견해 일치**

○ ①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양형기준 준수율은 **89.88%**로 높음
- **최빈값 12개월, 18개월, 24개월 순 / 평균형량 18.32개월**: 모두 기본영역 내에 위치함
- 각 영역별 단일범 평균형량은 12.8개월(10월 - 2년6월), 16.6개월(1년

- 4년), 29.9개월(2년6월 - 6년)로 대체로 각 영역 내에 위치함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보험사기(1억 미만) 판결문분석 사례를 일반사기로 편입 가정할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은 80.52%, 평균형량은 16.01개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법정형(하한 1년)을 고려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 여부: ① 법정형의 하한이 기본영역의 하한(1년)이 되고, 앞서 소유형 1에서 본 ②, ③과 같은 이유로 조정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다) 소유형 3(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견해 일치

○ ●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법정형 하한 3년(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양형기준 준수율은 **92.72%**로 높음
- **최빈값 36개월, 24개월, 48개월 순 / 평균형량 37.80개월:** 모두 기본영역 내에 위치하나, 하한에 근접함
- 각 영역별 단일범 평균형량은 22.7개월(1년6월 - 4년), 36.1개월(3년 - 6년), 51.2개월(4년 - 7년)로 각 영역 내에 위치함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보험사기(5억 이상 50억 미만) 판결문분석 사례(2건)가 적어 통계 분석의 지표로 삼기 어려움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사기의 형량범위를 수정할 근거로 삼기 어렵고, 사례도 적음

○ 단,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의 규범적 필요성을 인정

- (-) 통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기본영역에 포함되고, 오히려 하한에 근접해 있는 점, 852건 중 특별조정(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복수로 많은 경우)한 가중영역 상한 10년6월(7년의 1/2 가중)을 초과한 판결이 2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한 타 범죄도 대부분 사기범죄보다 동일 또는 낮게 설정되어 있음. 중하게 설정된 사례는 상해치사죄 가중영역(4년 - 8년), 아동학대중상해의 가중영역(4년 - 8년), 촬영물 등을이용한강요의 가중영역(5년 - 8년) 정도임
- (+) 단,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이 3년~30년까지임에도, 현재의 형량범위는 가중영역 상한을 특별조정하더라도 10년6월에 불과하여 법정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고, 가중영역 상한 7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건도 12건이나 발견됨 (8년 5건, 9년 5건, 13년 2건)
- (+)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사기 제3유형(제4유형도 마찬가지)의 평균형량이 32.4개월(2018년) ▷ 35.8개월(2022년)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사기범죄와 법정형이 같은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제4유형, 5억 원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5년 - 9년), 앞서본 바와 같은 통계수치, 소유형 4, 5와의 관계,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8년**으로 상향

(라) 소유형 4 (50억 이상 300억 미만): **기본,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견해 일치**

○ **●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준)**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법정형 하한 5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 변경이 없으나, 양형기준 준수율은 **72.09%**로 타 유형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임
- 최빈값 36개월, 60개월, 72개월 순 / 평균형량 59.40개월: 최빈값이 감경영역에 위치하고(차순위 2개 최빈값은 기본영역 내), 평균형량은 기본영역 내에 위치함
- 각 영역별 단일범 평균형량은 37.2개월(3년 - 6년), 60개월(5년 - 8년), 76.3개월(6년 - 9년)로 각 영역 내에 위치함
- 통계상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판결(17건, 20%)이 양형기준의 상

한을 이탈한 판결(7건, 8.14%)보다 많음. 다만, 이득액 합산에 따른 유형상승의 경우와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복수로 많은 경우)의 경우 하한을 1/3 또는 1/2 감경하게 되므로 모두 하한 이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법정형 하한 5년(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50억 이상 300억 미만) 판결문분석 사례가 없음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사기의 형량범위를 수정할 근거로 삼기 어렵고, 사례도 적음

○ 단, 기본·가중영역의 상한 상향의 규범적 필요성을 인정(소유형 4, 5 공통)

- 특정경제범죄법 제1항 제1호의 사기죄의 법정형은 5년~30년(경합범 가중시 45년, 누범가중시 50년)까지임에도, 현재의 형량범위는 가중영역 상한을 특별조정하더라도 13년6월(제4유형), 19년6월(제5유형)에 불과하여 법정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정형 '5년 이상'인 범죄 중 현재 사기범죄 제4유형보다 가중영역을 중하게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보통동기살인(15년 이상), 특수공무방해치사(7년 - 10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7년 - 11년)7), 교통사고후도주치사(5년 - 10년), 교통사고후유기도주치사(6년 - 12년), 일반공갈범죄(7년 - 11년), 아동학대치사(7년 - 15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수입/수출(7년 - 13년)], 적어도 재산범죄인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아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반공갈범죄 양형기준 중 소유형 4, 5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5억 이상, 50억 미만(법정형 3년 이상)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이상(법정형 5년 이상, 무기)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7) 300억 이상의 경우 9년-15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사기 4유형에 대한 평균형량이 51.1개월(2018년) ▷ 56.9개월(2022년)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가중영역 상한 9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건이 7건(10년 3건, 11년, 12년, 13년6개월, 15년 각 1건)이나 발견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앞서본 바와 같은 통계수치, 소유형 3, 5와의 관계,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9년, 11년**으로 상향

(마) 소유형 5 (300억 이상): **기본,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견해 일치

○ ●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법정형 하한 5년(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 변경이 없으나, 양형기준 준수율은 10%로 낮음
- 최빈값 48개월 / 평균형량 37.80개월: 최빈값 및 평균형량이 감경영역에도 포함되지 않고, 감경영역 하한을 이탈함
- 다만, 사건수가 10건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법정형 하한 5년(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보험사기(300억 이상) 판결문분석 사례가 없음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사기’의 양형범위를 수정할 근거로 삼기 어렵고, 사례도 적음

○ 단, 기본·가중영역의 상한 상향의 규범적 필요성을 인정

- 형량범위 특별조정 관련, ‘특별조정 결과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한을 17년으로 정할 경우 특별조정(25년6개월)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 제4유형 사건 중에서는 제5유형 가중영역 상한 13년을 초과하여 선

고된 사건이 2건 있으므로(13년6개월, 15년 각 1건), 향후 제5유형에
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충분히 예상됨

- 앞서본 바와 같은 통계수치, 소유형 3, 4와의 관계,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가중영역 형량범
위 상한을 **11년, 17년**으로 상향

(바) 소결론 ➡ 견해 일치

01 |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9년	6년 - 9년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11년	8년 - 13년 17년

라. 조직적 사기

(1) 현행 양형기준상 형량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2) 선고 형량

- 일반사기와 마찬가지로 단일범(동종경합범)이 아닌 ‘전체사건’ 형량분포[아래 표9-18]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함
- 형량 범위(감경/기본/가중 포함)는 아래 표에 회색 음영으로 표시

[표 9-18] 조직적 사기 형량분포(전체)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6
제1유형	수	1	3	7	29	2	189	1	219	4	203	703	127	10	91	547	30	-	20	271	4
	비율	0.0	0.1	0.3	1.1	0.1	7.0	0.0	8.1	0.1	7.5	26.1	4.7	0.4	3.4	20.3	1.1	-	0.7	10.0	0.1
제2유형	수	-	-	-	-	-	1	-	5	-	15	120	38	6	40	296	36	2	22	333	5
	비율	-	-	-	-	-	0.1	-	0.3	-	1.0	8.2	2.6	0.4	2.7	20.2	2.5	0.1	1.5	22.8	0.3
제3유형	수	-	-	-	-	-	-	-	-	-	-	5	3	-	5	24	3	-	1	28	1
	비율	-	-	-	-	-	-	-	-	-	-	1.9	1.2	-	1.9	9.3	1.2	-	0.4	10.9	0.4
제4유형	수	-	-	-	-	-	-	-	-	-	-	1	-	-	-	3	-	-	-	6	-
	비율	-	-	-	-	-	-	-	-	-	-	2.3	-	-	-	6.8	-	-	-	13.6	-
제5유형	수	-	-	-	-	-	-	-	-	-	-	-	-	-	-	-	-	-	-	3	-
	비율	-	-	-	-	-	-	-	-	-	-	-	-	-	-	-	-	-	-	6.3	-
전체	수	1	3	7	29	2	190	1	224	4	218	829	168	16	136	870	69	2	43	641	10
	비율	0.0	0.1	0.2	0.6	0.0	4.2	0.0	5.0	0.1	4.8	18.4	3.7	0.4	3.0	19.3	1.5	0.0	1.0	14.2	0.2

유형		형량(월)																			
		27	28	29	30	32	33	34	36	38	40	41	42	44	45	48	50	54	56	60	66
제1유형	수	-	4	1	123	4	-	1	65	-	-	-	14	-	1	16	-	1	-	4	-
	비율	-	0.1	0.0	4.6	0.1	-	0.0	2.4	-	-	-	0.5	-	0.0	0.6	-	0.0	-	0.1	-
제2유형	수	1	31	-	213	18	2	5	150	2	1	-	43	2	-	52	1	5	-	9	-

유형		형량(월)																			
		27	28	29	30	32	33	34	36	38	40	41	42	44	45	48	50	54	56	60	66
제3유형	비율	0.1	2.1	-	14.6	1.2	0.1	0.3	10.3	0.1	0.1	-	2.9	0.1	-	3.6	0.1	0.3	-	0.6	-
	수	-	2	-	23	1	-	-	47	1	-	-	20	-	-	33	1	13	-	22	1
	비율	-	0.8	-	8.9	0.4	-	-	18.3	0.4	-	-	7.8	-	-	12.8	0.4	5.1	-	8.6	0.4
제4유형	수	-	-	-	2	-	-	-	6	-	-	1	2	1	-	3	1	3	2	6	-
	비율	-	-	-	4.5	-	-	-	13.6	-	-	2.3	4.5	2.3	-	6.8	2.3	6.8	4.5	13.6	-
제5유형	수	-	-	-	1	-	-	-	14	-	-	-	-	-	-	3	-	-	-	-	-
	비율	-	-	-	2.1	-	-	-	29.2	-	-	-	-	-	-	6.3	-	-	-	-	-
전체	수	1	37	1	362	23	2	6	282	3	1	1	79	3	1	107	3	22	2	41	1
	비율	0.0	0.8	0.0	8.0	0.5	0.0	0.1	6.3	0.1	0.0	0.0	1.8	0.1	0.0	2.4	0.1	0.5	0.0	0.9	0.0

유형		형량(월)																		전체
		72	80	84	87	90	96	108	112	114	120	132	144	156	168	180	192	240	264	
제1유형	수	1	-	-	-	1	-	-	-	-	-	-	-	-	-	-	-	-	-	2,697
	비율	0.0	-	-	-	0.0	-	-	-	-	-	-	-	-	-	-	-	-	-	100.0
제2유형	수	6	-	2	-	-	-	-	1	-	-	-	-	-	-	-	-	-	-	1,463
	비율	0.4	-	0.1	-	-	-	-	0.1	-	-	-	-	-	-	-	-	-	-	100.0
제3유형	수	7	-	10	1	1	2	1	-	-	-	-	1	-	-	-	-	-	-	257
	비율	2.7	-	3.9	0.4	0.4	0.8	0.4	-	-	-	-	0.4	-	-	-	-	-	-	100.0
제4유형	수	1	1	1	-	-	-	-	-	1	1	-	1	-	-	1	-	-	-	44
	비율	2.3	2.3	2.3	-	-	-	-	-	2.3	2.3	-	2.3	-	-	2.3	-	-	-	100.0
제5유형	수	4	-	5	-	-	2	4	-	-	1	1	-	2	1	1	3	2	1	48
	비율	8.3	-	10.4	-	-	4.2	8.3	-	-	2.1	2.1	-	4.2	2.1	2.1	6.3	4.2	2.1	100.0
전체	수	19	1	18	1	2	4	5	1	1	2	1	2	2	1	2	3	2	1	4,509
	비율	0.4	0.0	0.4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100.0

(3) 검토

○ [공통] 보험사기의 경우

- 판결문조사 및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 전체범죄와 비교할 경우 소유형 1, 2의 최빈값이 감경영역의 하한을 이탈하고, 평균형량도 감경영역의 하한을 이탈하거나 감경영역에 속하는 등 조직적 사기 유형보다 형량범위가 현저히 낮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3유형은 2건, 4, 5유형은 없음)

유형	항목	조직적 사기 전체	보험사기(조직적 사기 가정)
1유형	최빈값	12, 18, 24개월 순	6, 8, 4개월 순
	평균형량	15.80개월	7.64개월
	양형기준 준수율	75.34%	17.58%
	분석	최빈값, 평균형량 감경영역 내에 포함	최빈값, 평균형량 감경영역 하한 이탈
2유형	최빈값	24, 18, 30개월 순	12, 18, 10개월 순
	평균형량	25.41개월	16개월
	양형기준 준수율	84.55	40.26%
	분석	최빈값, 평균형량 기본영역 내에 포함	최빈값 감경영역 하한 이탈, 차순위 2개 최빈값 및 평균형량은 감경영역에 포함

- 보험사기방지법상 사기의 양형기준 편입에 따라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 권고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해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음
 - 보험사기 범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재의 양형기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례 축적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보다 ‘일반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 보험사기 범죄의 형량범위가 ‘조직적 사기’ 전체의 형량범위보다 낮다고 하여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기의 형량범위가 낮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범위의 하향조정은 고려하기 어려움

(가) 소유형 1(1억 미만): **현행유지 ⇨ 견해 일치**

○ ●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양형기준 준수율은 75.34%임
- 최빈값 12개월, 18개월, 24개월 순 / 평균형량 15.80개월: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감경영역 내에 위치함(차순위 2개 최빈값은 기본영역 내)
- 그러나 각 영역별 단일범 평균형량은 12.3개월(1년 - 2년6월), 17.3개월(1년6월 - 3년), 27.8개월(2년6월 - 4년)로 영역 내에 있거나 약간 낮은 수준임. 최빈값이나 전체 평균형량이 감경영역에 분포하는 이유는 감경영역의 비율(65.9%)이 높기 때문임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 판결문조사 대상판결(형법 제347조)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사건(98건) 분석 결과
- 최빈값 12개월, 18개월, 24개월 순 / 평균형량은 16.83개월 →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감경영역 내에 포함됨(차순위 2개 최빈값은 기본영역 내)
- 양형기준 준수율 80%
- 판결문조사 및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현재 전체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결과와 최빈값, 평균형량 분포가 유사함(즉, 양형기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정된 법정형(1년 이상)을 고려하더라도, 작량 감경 후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인데 제1유형의 감경영역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존 형량범위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소유형 2(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현행유지 ⇨ 견해 일치**

○ ●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양형기준 준수율은 84.55%로 높음
 - 최빈값 24개월, 18개월, 30개월 순 / 평균형량 25.41개월: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기본영역 내에 위치하나, 하한에 근접함
 - 각 영역별 단일범 평균형량은 18.4개월(1년6월 - 3년), 26.3개월(2년 - 5년), 40개월(4년 - 7년)로 영역 내에 있거나 약간 낮은 수준임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 판결문조사 대상판결(형법 제347조) 이득액 1억 이상 5억 미만인 사건(68건) 분석 결과
 - 최빈값 24개월, 30개월, 36개월 순 / 평균형량은 30개월 →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기본영역에 위치함
 - 양형기준 준수율 89.71%로 높음
 - 판결문조사 및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현재 전체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결과와 최빈값, 평균형량(모두 기본영역 내) 분포가 유사함(즉, 양형기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다) 소유형 3(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견해 일치

- ●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법정형 하한 3년(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양형기준 준수율은 83.66%임
 - 최빈값 36개월, 48개월, 24개월 순 / 평균형량 40.58개월: 최빈값과 평균형량이 모두 감경영역 내에 위치함
 - 각 영역별 단일범 평균형량은 26.5개월(2년 - 5년), 40개월(4년 - 7년), 58.1개월(6년 - 9년)로 감경영역을 제외하고는 영역의 하한보다 낮은 수준임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전기통신금융사기
- 법정형 하한 1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상습범(동

법 제15조의2 제3항)은 1/2 가중한 1년6월이 하한이 됨

- 판결문조사 대상판결(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인 사건(26) 분석 결과
- 최빈값 36개월, 42개월, 60개월 순 / 평균형량은 60.65개월 → 평균형량은 기본영역에, 최빈값은 감정영역에 위치함
- 양형기준 준수율 88.46%로 높음
- 판결문조사 및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현재 전체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결과와 최빈값, 평균형량 분포가 유사(즉, 양형기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단,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의 규범적 필요성을 인정

- (-) 기존의 권고 형량범위 설정 당시 논의 결과는 현재에도 유효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 과정에서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양형실무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함
- (-)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한 가중영역 상한은 13년6월(9년의 1/2 가중)인데, 현행 양형실무(257건 중 9년을 초과한 판결은 1건에 불과함)를 고려할 때, 규범적인 관점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최근 주로 문제되는 조직적 사기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세사기, 금융투자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경우는 적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법정형을 토대로 소유형 3의 형량범위를 상향할 경우, 조직적 사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이 과도하게 상향될 우려가 있음
- (-)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한 타 범죄를 고려하더라도 조직적 사기 범죄보다 높게 설정한 범죄를 찾아볼 수 없음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죄의 법정형은 3년~30년까지임에도, 현재의 형량범위는 가중영역 상한을 특별조정하더라도 13년6월에 불과하여 법정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음

-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유형에 대한 평균형량이 29.3개월(2018년) > 40.0개월(2022년)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실질적인 처벌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 이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일부 1심 판결례(아래 표)의 양형은 실제로 180개월, 240개월 등 가중영역 상한(9년)을 초과한 형을 선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위 사례는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가중영역(6년-13년6월)]을 하더라도 그 상한을 초과한 것임(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총책 등에 대한 보다 높은 형량범위 제시가 필요함)

구분	사건번호	이득액	형량	비고	비고
1	서울동부 2023고합342 피고인 강희우	20억 초과	징역 15년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 2024노1057)	보이스피싱
2	서울동부 2023고합47 피고인 김광민	25억 초과	징역 20년	상고기각 확정 ⁸⁾ 됨	
3	안산지원 2016고합203 피고인 박철	19억 초과	징역 20년	상고기각 확정됨	

- (+) 최근 문제되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
-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부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의 성격상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8) 서울고등법원 2023노2087, 대법원 2024도497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음(아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자행한 총책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2012년경 국내에서 통장을 편취하는 범행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2012년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2014년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2016. 6.경 광민파가 해체된 이후에도 체포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중국으로 도망가 불법적인 일을 하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폐해가 상당하므로 통상의 사기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이 필요함
- 앞서본 바와 같은 통계수치,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선고사례, 소유형 4, 5와의 관계,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11년**으로 상향

(라) 소유형 4 (50억 이상 300억 미만): **기본,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견해 일치**

○ **●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존)**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법정형 하한 5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 변경이 없으나, 양형기준 준수율은 **45.45%**로 타 유형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임
- 최빈값 60개월, 36개월, 24개월(동일값) / 평균형량 51.75개월: 최빈값 3개 중 최대값(60개월)은 감경영역에, 나머지 2개는 감경영역 하한을 이탈함. 평균형량은 감경영역 내에 위치함
- 각 영역별 단일범 평균형량은 30.6개월(4년 - 7년), 47.1개월(6년 - 9년), 61.3개월(8년 - 11년)로 모두 영역의 하한보다 낮은 수준임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 법정형 하한 1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상습범(동법 제15조의2 제3항)은 1/2 가중한 1년6월이 하한이 됨
- 판결문조사 대상판결(형법 제347조) 이득액 50억 이상 300억 미만인 사건(6건) 분석 결과: 평균형량은 210개월 → 평균형량은 가중영역 상한을 이탈하였음
- 판결문조사 및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①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체사건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에 비해 다소 선고형량이 낮지만(평균형량 및 최빈값 중 1개가 감경영역에 속하고, 최빈값 중 2개는 하한을 이탈함), ②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에 비해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단, 기본·가중영역의 상한 상향의 규범적 필요성을 인정(**소유형 4, 5 공통**)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기죄의 법정형은 5년~30년(경합범가중시 45년, 누범가중시 50년)까지임에도, 현재 제4유형의 형량범위는 가중영역 상한을 특별조정하더라도 16년6월에 불과하여 법정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 특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50억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나, 현행 양형기준은 '무기'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형량범위 특별조정 관련, '특별조정 결과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조정한 상한이 25년 이상이 되도록 가중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정형 '5년 이상'인 범죄 중 현재 제4유형보다 중하게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보통동기살인 가중영역(15년 이상), 아동학대치사 가중영역(7 - 15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수입/수출 가중영역(7년 - 13년)]
- 일반공갈범죄 가중영역(7년 - 11년)과 비교해 볼 때, 조직적 사기에서는 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5억 이상, 50억 미만(법정형 3년 이상)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이상(법정형 5년 이상, 무기)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 일부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36, 137(병합), 267(병합), 항소심 계속 중]의 양형은 이득액 합산 기준 제4유형에 해당함에도 324개월(27년), 420개월(35년) 등 가중영역 상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가중영역(8년 - 16년6월)]을 하더라도 그 상한을 이탈한 것임(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보다 높은 형량범위 제시가 필요함)
- 일부 전세사기 판결례에서도 가중영역 상한을 이탈한 예가 있음

구분	사건번호	이득액	형량	비고	비고
1	인천지법 2023고단1562	150억 초과	징역 15년	항소심 계속 중 (인천지법 2024노693)	전세사기

	피고인 남헌기				
2	성남지원 2019고단20 피고인 권은미	130억 초과	징역 15년	항소심 계속 중 (2023노39)	

- 앞서본 바와 같은 통계수치,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선고사례, 소유형 3, 5와의 관계,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11년, 17년**으로 상향

(마) 소유형 5 (300억 이상): **기본,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견해 일치

○ ● 양형기준 적용사건(기준)

- 법정형 하한 없음, 상한 10년(상습범 1/2 가중) / 법정형 하한 5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 변경이 없으나, 양형기준 준수율은 56.25%임
- 최빈값 36개월, 84개월 순 / 평균형량 89.88개월
- 최빈값은 감경영역 하한을 이탈, 차순위 최빈값은 감경영역에 포함
- 평균형량은 감경영역에 속하나, 기본영역 하한에 근접함

○ ● 양형기준 설정사건 편입 측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 법정형 하한 1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상습범(동법 제15조의2 제3항)은 1/2 가중한 1년 6월이 하한이 됨
- 판결문조사 대상판결(형법 제347조) 이득액 300억 이상 사례가 없음

○ 단, 기본·가중영역의 상한 상향의 규범적 필요성을 인정

- 앞서본 바와 같은 통계수치,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소유형 3, 4와의 관계,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15년, 무기**로 상향

(바) 소결론 ⇨ **견해 일치**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11년	8년 - 11년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5년	11년 이상, 무기

마. 조직적 사기 정의규정의 ‘전화금융사기’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수정(견해 일치)

02 조직적 사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3. 양형인자

가. 현행 양형인자표(논의대상 양형인자 굵은 글씨 및 밑줄 표시)

(1) 일반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u>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u>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u>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u>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u>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u>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u>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u>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u>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u>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조직적 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u>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u>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u>단순 가담</u> ● <u>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u>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u>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u>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형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견해일치

(1)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각 삭제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규정 수정(적극)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2) 일반양형인자 - 조직적 사기의 행위자/기타 관련 감경요소로 ‘일반적 수사협조’의 추가 및 그에 관한 정의규정 추가 여부 (적극)

거. 일반적 수사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근거

- 현행 양형인자는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만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수사 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지 않았음

-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에 관한 판결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사 협조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파악한 경우가 여럿 있었음 (특히 보험사기와 같이 범죄행각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협조가 수사·기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큼)
- 현행 양형기준에서 ‘일반적 수사 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범죄군은 디지털 성범죄,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이고, 위 범죄군 모두 ‘특별양형인자로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별도 특별양형인자로 두고 있음
- 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조직적 사기의 경우에도 위 요소를 추가할 필요 있음

다. 견해 대립

(1)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삭제 여부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지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안(6인): 삭제하는 안

-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II” 33, 34쪽

표에 의하더라도 계약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을 범행수법으로 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1,015건 중 6건에 불과함

범행 수법	계약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비해당	1,009	8.95	6.19	0.243	0.808
		해당	6	8.33	2.66		

- 한편 위와 같은 예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시와도 저촉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아래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들도 다수 발견됨)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 비록 위 대법원 판결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관한 것이고, 기망행위의 정도에 관한 판시는 아니지만,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고 발생사실 신고 및 보험금 청구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망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 있음(고지의무불이행 자체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위 대법원 판결에서 고의를 인정한 사례들은 ‘부작위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 2안(6인):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안

- 사안이 드물더라도 고지의무를 불이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함
- 위 판결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하기에 적절치 않음

(나) [감경] 조직적 사기의 감경요소인 '단순 가담'의 정의규

정에 ① 보이스피싱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 행위분담을 하여 사실상 총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행위 분담자인 경우, ② 해당 단순 실행행위가 조직적 사기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를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 추가 여부

타. 단순 가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1안(3인): 추가하는 안

- 최근 보이스피싱은 범죄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대신, 각 범행 단계별로 조직화되고 개별 조직별 '총책'을 정점으로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만큼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진화하였음
- 즉, 수거책 조직이나 대포폰 조달 조직이 하부조직, 콜센터 조직이 상부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에 이르렀으므로 이들 중 어느 단계에 가담했느냐를 기준으로 단순 가담과 주도적 가담을 구분하는 것은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임
- 보이스피싱에서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단순 가담'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됨

○ 1안(9인): 현행을 유지하는 안

- 보이스피싱 범죄의 각 범행 단계별 행위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또한 총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을 두는 경우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에도 ‘단순 가담’의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위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게 됨
-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총책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행위반가치의 관점에서 객관적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고,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모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함
- 실무상, 초범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미필적 고의로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권고 형량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법감정에도 부합함

(다) [감경] 일반사기/조직적 사기의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할지 여부

- 1안(5인): 변경하는 안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죄책이 감경될 수는 없음

- 1안(7인): 현행을 유지하는 안

■ 사기범죄, 폭력범죄에 이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고, 명예훼손 범죄,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 주거침입범죄에서도 특별감경인자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법의 등을 고려하면 특별감경인자로 보는 것이 적정

○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를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로 수정 여부

- 1안(8인): 수정하는 안

■ 사기죄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1안(4인): 현행을 유지하는 안

■ 고의범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야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행태가 있는 경우 책임을 감경하는 양형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됨

■ 결과불법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피해자 관련 사정으로서 책임을 감경하는 양형조건이 될 수 있음

(라) [가중] 일반사기/조직적 사기의 가중요소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규정 관련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부분 삭제 여부

- 1안(3인): 삭제하는 안

- 피고인의 고의적인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는 사건 피해자에게 그것이 발생한 결과 자체로서 양형인자로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고의범인 사기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님
- 위 양형인자를 가중인자로 정하고 있는 범죄 중 공갈범죄를 제외하고, 횡령·배임범죄, 방화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명예훼손범죄, 디지털성범죄에서 모두 해당 양형인자에 이를 요구하지 않음

- 2안(9인):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안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할 수 있었을 때만 이를 가중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이 알 수 없었던 결과불법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는 없음
- 피해의 정도는 결과불법으로서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결과불법을 특별가중인자로 삼아 한 번 더 가중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공갈범죄는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고, 방화범죄 등은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 횡령·배임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상 피해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라. 소결(다수의견에 따름)

01^I 일반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 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 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I 조직적 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일반사기

가.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조직적 사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단순 가담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거.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집유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일반사기 유형)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조직적 사기 유형)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일반사기 유형)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조직적 사기 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Ⅲ. 향후 일정

- 일시: 2024. 9. 30.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점유기준) 검토

[별첨 1]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¹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범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 범행의 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¹ 일반사기

가.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조직적 사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별첨 2] 일반사기 형량범위 분석표

[illegible]

[별첨 3] 조직적 사기 형량범위 분석표

표 3		교직원 사기 현황(2022년)																																										합계																																																																																																																																																																																																																																																																																																																																																																																																																																																																																									
연월(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95.98

알뜰기준(당첨,기분,가운) 원유
기분원유
조준값 (당첨 기준)

50대 이상 보행자 300대 이상 보행자/연간교통사고율상승자에게 '사태없음' 기록할 수 있음